

지역사회협력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 12. 26 개정 2018. 02. 28
개정 2018. 10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와 산업체, 각급 학교, 공공기관, 공공단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·기여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사회협력위원회 설치) ①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동대학교총장(이하 ‘총장’이라 한다.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내부위원 : 교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(개정 2018. 2. 28.)
2. 외부위원 : 산업체, 각급학교, 공공기관, 공공단체, 민간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각 전문직역(專門職域)의 전문가 (개정 2018. 2. 28.)
-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에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역사회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
- ④ 간사는 회의준비, 회의록 작성, 회의결과 보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, 역할 또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산업 연계, 창업활성화 지원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제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봉사 및 주민시설 개방, 지역문화 선도활동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의 제공에 관한 사항
4.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5. 위 1~4호 관련 대학내 담당부서 업무계획의 총괄 심의 및 조정 (신설 2018. 10. 29.)
6. 기타 지역사회와의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

제5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협력부서장이 따

로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8. 10. 29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.